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술보호 행정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불공정거래 조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면서, 특구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소속을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으로 변경하고, 그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하며, 특구혁신기획단에 글로벌 혁신특구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상공인정책실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면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

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9급 1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9급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30.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감사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3명”을 각각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 제52호부터 제7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6호부터 제1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시행

5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종합·보고

5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5.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57.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58.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59. 수요 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0.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지원
61.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62.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63. 산·학 협력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4. 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65. 중소기업의 시험 연구장비와 연구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6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
(異業種交流支援事業) 및 중소기업 융합·복합관련 시책의 수립·지
원
67.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68.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69.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70. 중소기업 간 협업(協業) 사업의 지원
71. 기술침해사건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72.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
73.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양성 지원
74.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재직자의 능력 향상 지원
7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
등학교의 운영 지원
76. 중소기업 인력수급 효율화 정책의 수립·시행

77.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기업공급 정책의 수립·시행
78.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
립·시행에 관한 사항
79.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80.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81.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분석 지원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전문가의 양성,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3.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84.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85.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6.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7.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88.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89. 지역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90.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1.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2. 지역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3.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종합·조정
94. 지역기업 육성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95. 지역사업평가기관의 운영 및 관리·감독

96. 지역·권역별 성장유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97. 지역·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98. 지역·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9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0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10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분석 및 성과 점검
10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3.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표준 활용 확산, 특허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104.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10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06.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10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확산체계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8.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109.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건전성 지원
110. 중소기업의 진단·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양성·관리
112.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1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벤처기업의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114. 지역중소기업 입지정책 수립 및 시행

115. 중소기업 밀집지역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3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 제18호 및 제29호부터 제6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 중소기업의 재창업 정책의 수립·시행

제14조제3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의4. 유망 소상공인 창업,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제26조제3항 전단 중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를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에”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각각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구혁신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보좌한다.

제30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6호까지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각각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한다.

18.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19.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승인·변경 및 지정·지정해제
20.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대외 협력
21.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 수립지원
22. 글로벌 혁신특구 관리·감독 및 운영 평가
23.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4. 글로벌 혁신특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5.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26.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83”을 “488”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9”를 “46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84”를 “879”로 하고, 일반직 계 “536”을 “5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31”을 “526”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중소기업정책실 2개 과	7명
2) 창업벤처혁신실 1개 과	4명

[별표 5]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및 제30조의3제4항 관련)

1. 특구혁신기획단(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21
일반직 계	21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20

2.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3. 소상공인손실보상과(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3급 또는 4급 이하	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감사관 및 읍부즈만지원단장 각 1명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기획조정실장·감사관 --- ----- -----.
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① 중소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신설> 12. ~ 51. (생략) 52.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53. 중소기업의 재창업 정책의 수립·시행	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① ---- ----- ----- 4명----- --. ② ----- 4명----- ----- -----.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12. ~ 51. (현행과 같음) 52.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시행 5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종합·보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4.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건전성 지원	5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5. 중소기업의 진단·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5.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5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양성·관리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57. 지역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57.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58.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8.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59.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9. 수요 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0. 지역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0.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지원
61.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종합·조정	61.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62. 지역기업 육성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62.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63. 지역사업평가기관의 운영 및 관리·감독	63. 산·학 협력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4. 지역·권역별 성장유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64. 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7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73.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양성 지원
65. 지역·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65. 중소기업의 시험 연구장비와 연구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7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74.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재직자의 능력 향상 지원
66. 지역·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6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 및 중소기업 융합·복합 관련 시책의 수립·지원	7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 확산체계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67.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67.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76. 중소기업 인력수급 효율화 정책의 수립·시행
6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68.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77.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기업공급 정책의 수립·시행
69.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분석 및 성과 점검	69.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8.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0.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0. 중소기업 간 협업(協業) 사업의 지원	<신 설>	79.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71.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표준 활용 확산, 특허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71. 기술침해사건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80.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72.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72.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81.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분석 지원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8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전

	<u>문가의 양성, 기술개발 및 기</u>
	<u>반 조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3.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u>
	<u>보급·확산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4.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u>
	<u>관한 사항</u>
<u><신 설></u>	<u>85.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u>
	<u>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6.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u>
	<u>관한 사항</u>
<u><신 설></u>	<u>87.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u>
	<u>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8.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u>
	<u>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9. 지역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u>
	<u>· 시행</u>
<u><신 설></u>	<u>90.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u>
	<u>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u>
	<u>항</u>
<u><신 설></u>	<u>91.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 개</u>
	<u>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92. 지역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u>
	<u>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u>
	<u>사항</u>
<u><신 설></u>	<u>93.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u>
	<u>지원 정책의 종합·조정</u>

<u><신 설></u>	<u>94. 지역기업 육성 관련 지역혁</u>
	<u>신헌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u>
	<u>원</u>
<u><신 설></u>	<u>95. 지역사업평가기관의 운영</u>
	<u>및 관리·감독</u>
<u><신 설></u>	<u>96. 지역·권역별 성장유망기업</u>
	<u>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97. 지역·권역별 성장유망기업</u>
	<u>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u>
<u><신 설></u>	<u>98. 지역·권역별 성장유망기업</u>
	<u>관련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u>
	<u>동추진 및 융합 기획</u>
<u><신 설></u>	<u>9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정책</u>
	<u>의 수립·시행</u>
<u><신 설></u>	<u>10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u>
	<u>한 특례법」의 운용</u>
<u><신 설></u>	<u>10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u>
	<u>지원정책의 분석 및 성과 점</u>
	<u>검</u>
<u><신 설></u>	<u>10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u>
	<u>국제교류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03.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표준</u>
	<u>활용 확산, 특허 및 신기술 사</u>
	<u>업화 지원</u>
<u><신 설></u>	<u>104.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u>
	<u>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u>

	사항
<신 설>	10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 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06.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에 관한 사항
<신 설>	10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 확산체계의 구성·운영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8.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에 관한 사항
<신 설>	109.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건전성 지원
<신 설>	110. 중소기업의 진단·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1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의 양성·관리
<신 설>	112.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1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벤처기업의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4. 지역중소기업 입지정책 수 립 및 시행
<신 설>	115. 중소기업 밀집지역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

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① 창업 벤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 다.	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① ---- ----- ----- 2명-----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② ----- 2명-----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 소화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재창업 정책의 수립·시행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1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벤처기업의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 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삭 제>
19. ~ 28. (생 략)	19. ~ 28. (현행과 같음)
29.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의 수립·시행	<삭 제>
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의 종합·보고	<삭 제>

3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32.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33.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34.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삭 제>
35.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6. 수요 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7.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지원	<삭 제>
38.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9.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40. 산·학 협력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41. 중소기업의 시험 연구장비와 연구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삭 제>
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삭 제>

물」 제5조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 및 중소기업 융합·복합 관련 시책의 수립·지원	
43.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삭 제>
44.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삭 제>
45.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6. 중소기업 간 협업(協業) 사업의 지원	<삭 제>
47. 기술침해사건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삭 제>
48.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삭 제>
49.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양성 지원	<삭 제>
50.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재직자의 능력 향상 지원	<삭 제>
51.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삭 제>

<u>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 지원</u>		<u>62.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52. 중소기업 인력수급 효율화 정책의 수립·시행</u>	<u><삭 제></u>	<u>63.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53.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기업공급 정책의 수립·시행</u>	<u><삭 제></u>	<u>64.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54.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u><삭 제></u>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생략)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u>55.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u>	<u><삭 제></u>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u>56.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조정</u>	<u><삭 제></u>	1. ~ 6의2. (생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u>57.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분석 지원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신 설></u>	<u>6의3.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u> <u>과 지원에 관한 사항</u>
<u>58.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전문가의 양성,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신 설></u>	<u>6의4. 유망 소상공인 창업, 성장</u> <u>촉진에 관한 사항</u>
<u>59.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u>	<u><삭 제></u>	7. ~ 33. (생략)	7. ~ 33. (현행과 같음)
<u>60.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u>6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	<u><삭 제></u>	③ 중소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	③ ----- ----- ----- ----- ----- -----

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 ----- ----- ----- ----- -----.
제30조(규제자유특구기획단) ① <u>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둔다.</u> ② <u>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③ <u>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17. (생략) 18. <u>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특례관련제도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u> <신설>	제30조(특구혁신기획단) ① <u>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2024년 12월 31일-----</u> ---- <u>특구혁신기획단</u> -----. ② <u>특구혁신기획단</u> ----- ----- ----- -----. ③ <u>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보좌한다.</u> 1. ~ 17. (현행과 같음) 18. <u>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u> 19. <u>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승</u>

<신설>	<u>인·변경 및 지정·지정해제</u>
<신설>	20. <u>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대외 협력</u>
<신설>	21. <u>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 수립지원</u>
<신설>	22. <u>글로벌 혁신특구 관리·감독 및 운영 평가</u>
<신설>	23. <u>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u>
<신설>	24. <u>글로벌 혁신특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u>
<신설>	25. <u>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u>
<신설>	26. <u>그 밖에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u>
④ <u>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5와 같다.</u>	④ <u>특구혁신기획단</u> ----- ----- -----.
⑤ <u>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u>	⑤ <u>특구혁신기획단</u> ----- ----- -----

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	-----
(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	-----
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	-----
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 -----
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
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⑦ -----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	-----
라 <u>규제자유특구기획단</u> 에 제4	-- <u>특구혁신기획단</u> -----
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중소	-----
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	-----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⑧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⑧ -----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	-----
14조제4항에 따라 <u>규제자유특</u>	----- <u>특구혁신기획</u>
<u>구기획단</u> 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u>단</u> -----
보좌기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	-----
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2(소상공인코로나19회복	제30조의2(소상공인코로나19회복
지원단장) 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단장) ① -----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행정	-----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
칙」 제17조의3에 따라 <u>2022년</u>	----- <u>2024년</u>
<u>12월 31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	<u>12월 31일</u> -----
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	-----
지원단장 1명을 둔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소상공인손실보상과)	제30조의3(소상공인손실보상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	① -----
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
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
따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존	--- <u>2024년 12월 31일</u> -----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	-----
손실보상과를 둔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한시정원) ① 삭 제	제31조(한시정원)
②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u><삭 제></u>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2월 28일까지</u>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	
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	
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	
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 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 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에 둔다.	⑥ ----- ----- ----- 2024년 12월 31 일-----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3</u>	<u>488</u>	+5
·	·	·	
·	·	·	
일반직 계	<u>476</u>	<u>481</u>	+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9</u>	<u>464</u>	+5
·	·	·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84</u>	<u>879</u>	-5
·	·	·	
·	·	·	
일반직 계	<u>536</u>	<u>531</u>	-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31</u>	<u>526</u>	-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